
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(제37조제1항 관련)

| 교육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교육시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|   | 매 2년마다 16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         | 가.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2년마다 8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2년마다 16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                 | 가.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           | 매 2년마다 16시간<br>(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| 매 2년마다 16시간<br>(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2년마다 16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       | 매 2년마다 16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-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(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-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: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,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(이하 "인

터넷 교육"이라 한다)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나.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: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,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2의2.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,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.

3.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(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)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.

4.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.